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검정기준」 등 가축개량 관련 개정고시안 3종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알림

1.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가축개량 관련 고시 3종(「가축검정기준」,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규격기준」,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의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7.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예고 정보 및 고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도 게재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가축검정기준 개정 고시안 1부.

2.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규격기준 개정 고시안 1부.

3.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개정 고시안 1부. 끝.

